

제325회 정례회  
2013.12.20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#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2013. 12. 20 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3년 12월 02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04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10일

(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재길 경제통상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사업 및 전시·판매 범위(안 제3조 및 제4조)
- 판매장 관리·운영의 위탁(안 제5조)

- 수탁자의 의무(안 제6조)
- 사용료(안 제8조)
- 판매장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(안 제11조 ~ 안 제14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‘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’은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먼저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, 법 적합성,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, 표현의 명료성 등의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·운영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적절함.
- 다만,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건비가 매년 1억 5천 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도민들이 판매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

##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(이하 “판매장”이라 한다)은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(남문로 2가)에 둔다.

**제3조(사업)** 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·판매
2. 중소기업청 추천 상품 등의 전시·판매
3.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
4. 중소기업제품 전국 판매망 운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사업
5. 그 밖에 판매장 설치 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

**제4조(전시·판매품의 범위)** 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및 특산품
2.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제품 및 특산품
3.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산물(가공식품 포함)
4. 도 전략산업 및 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
5. 비교 전시·판매를 위한 타 시·도 및 외국의 중소기업제품, 특산품 등 (도지사가 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)

**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**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할 수 있다.  
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6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 
② 수탁자는 판매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,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.  
③ 수탁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7조(위탁의 취소)**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판매장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 
1. 제6조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위반한 때  
2.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**제8조(사용료)** ①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.  
② 사용료의 산출기준, 납부방법 등은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9조(관리·운영비)** ① 판매장의 관리·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도지사는 판매장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 
②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판매장 관리·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.

③ 판매장 관리·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한다.

④ 관리·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0조(판매장의 관리·운영규정)** 수탁자는 판매장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판매장운영위원회 설치)** ①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도 경제통상국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은 도 본청의 기업유치지원과장과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기업지원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⑥ 도지사는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「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위원회 심의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시·판매 입점업체 및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
2. 판매대금(수수료)에 관한 사항
3. 판매장 관리·운영규정 제·개정 등 승인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13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, 정기회는 매년 2월에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4조(실비보상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(지도·감독)** 도지사는 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지시를 할 수 있다.

**제1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3조(정부 등의 책무)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법

제26조(판로지원사업)

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

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8.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, 시·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·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

## □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

제23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 사용료의 요율, 일시사용허가,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□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

제3조(사업) 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는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4.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·운영

9. 지식경제부장관, 중소기업청장, 충청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
#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
- 사업기간 : 2013 ~ 2016(3년)
- 내 용 :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따라, 인건비, 매장 관리비, 판촉비, 시즌 인테리어 등 제비용

## 3. 관련조문 : 안 제9조(관리·운영비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전시판매장 관리·운영('14. ~ '16)
  - 판매장 개장 : '13. 12월(예정)/지하1·지상1~4층(1035.87m<sup>2</sup>)

### 나. 추계 결과

- 판매장 관리·운영('14 ~ '16)
  - 660백만원(인건비 456, 판촉비 및 활동비 45, 시즌인테리어 60, 운영비 99)

#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국비 330백만원 , 도비 330백만원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차년도 (‘14 년)	2차년도 (‘15 년)	3차년이후 (‘16 년)	계	
세 입	-	-	-	-	
세 출	220	220	220	660	
판매사원 인건비	152	152	152	456	
관측비 및 관측활동비	15	15	15	45	
시즌 인테리어비	20	20	20	60	
판매장운영비	33	33	33	99	
<b>재원 조달</b>	220	220	220	660	
의존 재원	소 계	110	110	110	330
	보조금	110	110	110	330
	지방교부세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110	110	110	330
	지방세	96	96	96	288
	세외수입	14	14	14	42
지방채	-	-	-	-	
기 금	-	-	-	-	
특별회계					
△△특별회계	-	-	-	-	
△△특별회계					
구 군 비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-				